

의안번호	2124322
의 퇴 인	한기호의원
회 답 일	2023. 9. 26.
추계번호	23D394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 2025년 376억원, 2029년 1,763억원 등 5년간 총 5,406억원(연평균 1,081억원)
 - (시나리오2: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60%) 2025년 226억원, 2029년 1,058억원 등 5년간 총 3,244억원(연평균 648억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참전명예수 당의 승계· 지급(안 제6 조의3 신설)	시나리오1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	376	740	1,094	1,433	1,763	5,406	1,081
	시나리오2(수 급자가 받는 금액의 60%)	226	444	656	860	1,058	3,244	648

- 주: 1. 본 추계 결과는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및 유족(배우자)의 사망인원을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망인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결과는 유족(배우자)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대상자와 동일한 금액 또는 60%를 승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며, 향후 실제 지급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추계에서의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단가는 2020~2023년까지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실제 월지급액 단가 인상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3 신설(참전명예수당의 승계)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 기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6조의3 신설(참전명예 수당의 승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제6조의3에 따른 참전명예 수당지급대상자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¹⁾조와 관련하여, 본 추계에서는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예우의 정지,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배우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60%²⁾를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시나리오별로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1)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8조(예우의 정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공무원연금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퇴직유족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비율을 반영하여 본 추계에 적용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는 2022년 기준 14만 6,932명으로, 2018~2022년간 평균사망률($\triangle 8.089\%$)³⁾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연도별 참전유공자 사망인원을 추정하면 [표 2] 와 같음

[표 2]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연도별 사망인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114,083	104,855	96,373	88,577	81,412
연도별 참전유공자 사망인원	9,228	8,482	7,796	7,165	6,585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 2] 의 연도별 참전유공자 사망인원에 국가보훈부의 무공수훈자 배우자 유족등록 비율 76.4%를 적용⁴⁾하여 배우자의 수를 산출한 후에 동 배우자의 수 중에서 연도별로 사망할 수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승계인원을 산출함
 - [표 3] 의 배우자 승계인원(누적) = 당해연도 사망자 중 유배우자 인원+전년도 사망자 중 유배우자인원(누적) $\times(1-\text{전년도 사망률 } 7.7\%)$ ⁵⁾
 -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을 추계기간 시점인 2025년부터로 가정하여 배우자 승계 인원을 추정함

3) $(146,932/205,896)^{(1/4)}-1$

4) 국가보훈부는 무공수훈자의 경우 주로 6·25전쟁 및 월남전 때 훈장수여자로 구성되어 적용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2023년 6월 기준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는 각각 13,988명, 10,690명으로, 생존배우자 비율이 76.4%(배우자/본인)임

5)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권 배우자는 32,460명, 2022년 배우자 사망자 수는 2,506명으로, 배우자 사망비율이 7.7%(배우자 사망자 수/수권 배우자)임

[표 3]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인원 추정: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연도별 참전유공자 사망인(A)	9,228	8,482	7,796	7,165	6,585
연도별 사망인원 중 유배우자 (A×76.4%)	7,050	6,480	5,956	5,474	5,031
배우자 승계인원(누적)	7,050	12,988	17,944	22,036	25,370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은 2023년 39만원으로, 동 지급액에 2020~2023년 평균증감률(6.816%)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단가를 추정함

[표 4]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계획: 2025~2029년

(단위: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월지급액	445	475	508	542	579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 2025년 376억원, 2029년 1,763억원 등 5년간 총 5,406억원(연평균 1,081억원)
 - (시나리오2: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60%) 2025년 226억원, 2029년 1,058억원 등 5년간 총 3,244억원(연평균 648억원)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나리오1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	배우자 승계인원(A, 명)	7,050	12,988	17,944	22,036	25,370	-
	월지급액(B, 천원)	445	475	508	542	579	-
	소요비용(A×B×12, 억원)	376	740	1,094	1,433	1,763	5,406
시나리오2 (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60%)	배우자 승계인원(A, 명)	7,050	12,988	17,944	22,036	25,370	-
	월지급액(B, 천원)	267	285	304.8	325.2	347.4	-
	소요비용(A×B×12, 억원)	226	444	656	860	1,058	3,244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및 유족(배우자)의 사망인원을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망인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족(배우자)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대상자와 동일한 금액 또는 60%를 승계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며, 향후 실제 지급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에서의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 단가는 2020~2023년까지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실제 월지급액 단가 인상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최형수	오명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형수	02-6788-4667	jjaps@na.go.kr